

번호	등록일자	구분	단위 법령 개정번호(일자)	목록	이해관계자	관리자	비고
1	2022.06.01.	법령	1.0 (2021.09.24.)	대기환경보전법	관할구청	김지훈 선임	
2	2022.06.01.	법령	1.0 (2021.09.24.)	물환경보전법	관할시청	김지훈 선임	
3	2022.06.01.	법령	1.0 (2021.01.05.)	폐기물관리법	관할구청	김지훈 선임	
4	2022.06.01.	법령	1.0 (2020.05.26.)	자원순환기본법	관할구청	김지훈 선임	
5	2022.06.01.	법령	1.0 (2021.01.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 업공제조합	김지훈 선임	
6	2022.06.01.	규칙	1.0 (2021.09.1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 업공제조합	김지훈 선임	
7	2022.06.01.	법령	1.0 (2021.09.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산업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지훈 선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2조			구리와 그화합물 등 총 47종 중 해당항목	4종 사업장 인허가 서류	적합	20.11.20 가동개시 신고
			구리와 그화합물 등 총 24종 중 해당항목	4종 사업장 인허가 서류	해당없음	20.11.20 가동개시 신고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4종 사업장 인허가 서류	적합	15.12.21 설치허가 20.11.20 가동개시신고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등	4종 사업장 인허가 서류	적합	15.12.21 설치허가 20.11.20 가동개시신고
4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자가측정결과 보고서	적합	1회/반기 자가측정 실시중
32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표	해당없음	-
33조	31조	36조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 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	해당없음	-
			-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없음	-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 30/10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8조	[허가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1. 폐수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수배출량이 증/감으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1.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3.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종 사업장 인허가 서류	적합	20.11.20 용량 변경 신고
35조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4종사업장 인허가 서류(0종)	적합	20.11.20 용량 변경 신고
	33조	41조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44조	1.영33조 운영기준 준수			
37조	34조	46조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4종 사업장 (신고서)	적합	4종 : 2.307톤/년
		47조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38조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4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저녁스버너	적합	17.03.10 설치허가
38조의 2	35조		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 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해당없음	-
38조의 3		50조	1.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정상적인 작동이 안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하는 행위 3.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해당 없음	적합	
38조의4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흡수식냉온수기 설치	적합	20.11.20 용량 변경 신고
39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동개시 신고서	적합	15.12.21 가동개시 신고
40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흡수식냉온수기 설치	적합	20.11.20 용량 변경 신고
41조	41~46조	53~58조	1.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2.초과부과금 : 유기물질 등 총 19개 항목	-	적합	-
46조2	63조	63조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주기 - 1, 2종 사업장 : 분기별 1회 이상 - 3종 사업장 : 반기별 1회 이상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적합	1회/일 작성중
47조	59조		1종사업장:수질환경기사 이상 1인 2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1인 3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3년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1인 이상 4종/5종사업장:피고용인 중 1인 이상	적산전력계 설치 운영	해당없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확인
		64조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해당없음	-
5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함 신고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자감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없음	-
67조	93~100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의무	-	해당없음	-
39조		5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별 자가측정 주기 관리	자가측정기록부	적합	1회/분기 자가측정 실시중
40조	39조		구 분	환경기술인 선임증명서	적합	18.12.18 선임
		0종사업장 (발생량 합계가 연간 00톤 이상인 사업장)				
		54조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준수 1.자가측정 위탁업체의 정도검시기록부 2.시료채취기록지/여과지 사업장내 보관	정도검시기록부 여과지 시료채취기록지	적합	대기측정기록부
41조	40조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저황유)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고시	-	해당없음	-
42조	42조	56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연료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43조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청정연료)외의 연료에 대해 사용금지	-	해당없음	-
44조	45조	59~61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자는 신고/변경신고/방지시설 등 설치	-	해당없음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77조		113조	기술인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기환경기술인교육 이수증	적합	21.04.14 교육 수료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2조			구리와 그화합물 등 총 47종 중 해당항목	5종 허가증	적합	T-N 외 7종 96.10.21 최초 설치신고
			구리와 그화합물 등 총 24종 중 해당항목	5종 허가증	해당없음	T-N 외 7종 96.10.21 최초 설치신고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5종 허가증	적합	T-N 외 7종 96.10.21 최초 설치신고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 등	-	적합	물리적처리, 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분리막여과처리
4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해당없음	-
32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자가측정	적합	21.06.15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33조	31조	36조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 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히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 설 -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히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5종 허가증	해당없음	-
			-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5종 허가증	적합	96.10.21 배출시설 신고 20.12.10 배출시설 변경 신고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 30/10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5종 허가증	해당없음	-
		38조	[허가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1. 폐수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수배출량 중/강으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재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종 허가증	적합	2017.01.04 배출시설변경신고 배출량 변경신고 방지시설변경신고
		38조	[신고 받은 시설의 변경신고]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염물질 변경 2020.12.10 배출할목변경신고
35조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5종 허가증	적합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확인
	33조	41조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적합	-
		44조	1.영33조 운영기준 준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37조	34조	46조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5중 허가증	적합	2017.3.6. 가동개시신고 수리
		47조				2017.1.4 폐수배출량변경신고 변경전:17.8톤/일 변경후:48톤/일
38조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적합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 기록부작성 1회/일
	49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38조의 2	35조		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2.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 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	해당없음	-
38조의 3	50조		1.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정상적인 작동이 안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	해당없음	-
38조의4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해당없음	-
39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개선명령 이력 없음	해당없음	-
40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개선명령 이력 없음	해당없음	-
41조	41~46조	53~58조	1.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2.초과부과금 : 유기물질 등 총 19개 항목		해당없음	-
46조2	63조	63조2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주기 - 1, 2종 사업장 : 분기별 1회 이상 - 3종 사업장 : 반기별 1회 이상	5중 허가증	해당없음	미대상
47조	59조		1종사업장:수질환경기사 이상 1인 2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1인 3종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3년이상 관련업무 종사자 1인 이상 4종/5종사업장:피고용인 중 1인 이상	5종 사업장 환경기술인 선임증	적합	2013.12.3 선임
		64조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 5.수질오염물질의 측정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적합	폐수배출시설및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1회/일 기록
5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해야 함 신고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해당없음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67조	93~100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의무	교육 수료증	적합	2019.3.20 일반 수질 환경기술인·심정보 교육 수료증 확인

폐기물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적합기준	대응현황	
					내용	현황
2조	2조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1.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을 설치, 운영 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4.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08.09)	적합	일반폐기물 최초신고 08.09.09 신고번호 제 수지97-489호
13조	7조	14조 별표 5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다음 기준과 방법을 지켜야 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준수 1.처리기한:30일 2.보관기한:지장 45일/일반 90일 3.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혼재 금지 4.보관시 역상폐기물 누출 금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고 : 가설건 축물 축조 허가서 (19.04)	적합	올바로시스템 배출량 신고 3회/월 이상
17조		17조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1. 건설·공사·작업 폐기물 10톤이상 배출 2. 다음의 일반폐기물 배출자 - 오토 : 2톤 이상/월평균 - 광재, 분진, 폐사,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 : 월평균 1톤 이상 3. 다음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폐촉매,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 각 월 평균 13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 또는 폐석면 : 월 평균 2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이상 - PCBs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 관리 보증보험 증권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적합	폐합성수지류 : KC환경, 다나 에너지솔루션 음식물폐기물 : 보성씨앤알 축산가공잔재물 : 지현유지, 태 인산업 병리성폐기물 : 연합씨앤씨, 스테리싸이클코리아, 메디코리아
		18조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일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일 지정폐기물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 서류제출/처리계획 확인 실시 -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폐기물수탁확인서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의 30/100 이상 증가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08.09)	적합	일반폐기물 08.09.09. 배출자 신고
	9조		지정폐기물 : 100톤 이상/연평균 지정폐기물 외 : 1,000톤 이상/연평균	폐기물관리대장	해당없음	
18조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함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해야 함 유해성 정보자료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함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해당없음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35조	17조	50조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 배출자 담당자 교육 수료증	보완	기존 담당자 퇴사로 배출자 교육 미이수 - 신규 담당자 연내 수료하여 교육증 보유 예정
		별표5의7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	폐기물 배출자 인계서 조회 처리결과	적합	올바로시스템에 매월 처리결과를 월말에 확인하여 이상있을 경우 업체측에 유선으로 확인
36조		5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 보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전산 기록 가능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	올바로 시스템 관리대장	적합	올바로시스템 확인
38조		6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관할관서에 제출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실적 보고	적합	2022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23.02.28
45조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이용하여 관리	올바로 시스템 관리대장, 배출자 인계서	적합	올바로시스템 확인 배출 담당 인계서 작성 등록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관련문서 (기록포함)	준수평가 (적합/보완/위반)	
					결과	비고
제16조		제13조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별 자원순환 목표를 기준에 따라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	제19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부과금부과요건 : 소각 또는 매립 사업장 일반폐기물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실적 보고	적합	2022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23.02.28 '22년도 분 납부실적 1,149천원 폐기물배출량 저감을 통한 부담금 감면 추진
	제19조 제20조		부과요율 매립 : 불연성(10원/kg), 가연성(25원/kg) 소각 : 가연성(10원/kg) 매립(30원/kg), 소각(10원/kg)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실적 보고	적합	2022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23.02.28 '22년도 분 납부실적 1,149천원 폐기물배출량 저감을 통한 부담금 감면 추진

자원재활용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관련문서 (기록포함)	준수평가 (적합/보완/위반)	
					결과	비고
제9조	제7조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용식료품류등의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등의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한국환경공단 포장재자료제출(출고수입실적, 재질구조평가)	적합	출고수입실적 제출(04.15) 재질구조평가 보완
제9조의2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한국환경공단 포장재자료제출(출고수입실적, 재질구조평가)	적합	출고수입실적 제출(04.15) 재질구조평가 보완(06.10 환경공단 실사)
제9조의3		제3조의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해당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한국환경공단 포장재자료제출(출고수입실적, 재질구조평가)	적합	출고수입실적 제출(04.15) 재질구조평가 보완(06.10 환경공단 실사)
제10조	제8조	제4조	해당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생분해성수지제품 매입량 추가 증빙자료 확인	보완	
제12조			해당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상물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납부고지서		22년분 납부
	제12조		폐기물부담금을 내야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준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실적		2021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22.02.28)
제12조의3	제14조의6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정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상이 되는 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을 환경부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건물 - 폐기물 300kg/일이상 배출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서(19.04)	적합	유은 주유소 앞 파이프천막 구조(39.2㎡) 분리배출시설 구비
제14조	제16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해당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들은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없음	
제16조	제18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분담금 납부	적합	재활용분담금 '21.06.28 납부 재질구조 개선을 통한 분담금 감면 추진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한다.	납부고지서	적합	재활용분담금 납부 재질구조 개선을 통한 분담금 감면 추진
제17조의2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을 할 수 있다.	제품, 포장재에 인증표시 하지 않음	해당없음	인증서 신청 검토
제18조	제24조	제15조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활용의무생산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분담금 공제내역 없음	해당없음	
	제26조		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담금 공제내역 없음	해당없음	

제품포장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관련문서 (기록포함)	준수평가 (적합/보완/위반)	
					결과	비고
-	-	제3조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증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	적합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재질구조 개선 지속
-	-	제4조	제조자들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	적합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재질구조 개선 지속
-	-	제10조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준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없음	
-	-	제11조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된다.	-	적합	위반내역없음

환경기술산업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관련문서 (기록포함)	준수평가 (적합/보완/위반)	
					결과	비고
제16조의8	제22조의10	제33조의13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적합	22.06.17 등록 완료
제16조의9	-	제33조의14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수 있으며,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즉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제37조	제35조		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 1차위반:200만 / 2차위반:250만 / 3차위반:300만	환경정보공개시스템	-	